

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문

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2월 3일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2. 제정이유

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나.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다.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라. 심충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마.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바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(구포동), 전화 051-309-4092, FAX 309-4099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정책)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, 연령별, 계층별,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.

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과 생명존중문화의 확산,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.

제3조(구민의 권리와 의무) ① 부산광역시 북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구민과 부산광역시 북구(이하 "구"라 한다) 지역 내 교육기관, 경찰서, 소방서, 의료기관, 복지기관, 종교단체,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(이하 "기관 등"이라 한다)의 장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
2.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
3. 심층조사,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
4.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
5. 법 제4조에 따른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·치료 및 사후관리
6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
7. 아동·청소년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지역사회 협력망 구축)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기관 등에 자살 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)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,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·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·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·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심층조사 실시와 자살통계관리를 위해 북부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자살예방센터 설치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센터(이하 "자살예방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1.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
2.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
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상담·교육 등
4.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
5.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
6. 그 밖에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둔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9조(자살예방의 날) 자살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, 각종 행사와 교육·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게 심리상담,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되는 사람이 교육·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·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·홍보 등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·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·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⑤ 구의 기관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예산 지원)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자는 법 제25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